|  |  |  |
| --- | --- | --- |
| **재정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4]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발전개혁위원회·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원회·해관총서 광동분서·각 직속해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감찰전문위원사무소 주재 재정부 :  국무원의 장비 제조업 진흥계획에 관한 유관 결정을 관철 실시하고,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및 자주창신능력을 제고하며, 산업구조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과 연합하여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장비 제조업 및 그 부속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산업주관부문, 업종협회 및 관련 기업 등 방면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 기초에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유관규정과 목록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규정> (별첨1 참고)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2.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2014년 수정)> (별첨2 참고)과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관련 부품 및 원재료 수입상품 목록 (2014년 수정)> (별첨3 참고)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은 본 통지 별첨2에 열거한 장비 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본 통지 별첨3에 열거한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3. <수입시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 (2014년 수정)> (별첨4 참고, 이하 <면세불가목록>으로 약칭)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3월1일(3월1일 포함)이후에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 수입설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비교하여 참조하고,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받는 아래 프로젝트와 기업은 본 통지 별첨4에 열거한 자가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속품, 예비부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1)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투자프로젝트와 외상투자프로젝트  (2) 외국정부 대출과 국제 금융조직 대출 프로젝트  (3)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가격을 매기지 않은 수입설비를 제공받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수 산업프로젝트;  (5) <해관총서 외상투자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진일보 장려에 관한 통지>(서세[1999]791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투자로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기술개조프로젝트.  <면세불가목록>의 조정 전에 이미 비준한 상기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1일 (3월 1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전에 비준한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 그리고 2014년 9월 1일(9월 1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전에 본 통지 별첨4에 열거한 설비의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별첨3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 (재과세[2012]14호)와 별첨3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3]14호),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내투자프로젝트에서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관한 공고>(2012년 제83호)를 시행한다. 유관 수입설비 대해서는 조정 전 유관목록의 심사에 따라 면세조건에 불부합하였으나 조정 후 <면세불가목록>에 따라 면세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2014년 3월 1일부터 조정 후 <면세불가목록>에 따라 시행한다. 화물이 이미 징세를 후 수입된 것이라면 세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2014년 9월1일부터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하는 본 통지의 <면세불가목록>에 있는 설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정책 시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 하는 상품에 대하여 <면세불가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과 대조하여 심사 확인한 후 세금을 징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면세불가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에 열거된 상품명칭이 동일하거나 또는 <면세불가목록>에만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면세불가목록>에 열거된 상품과 그 기술규격 지표를 적용한다.  4. 국내 산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석유 및 가스 시추설비, 반 잠수식 시추플랫폼,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심해 물리탐사선, 접촉네트워크형 다기능 종합 작업차량, 습식 전기 집진기 등 장비를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의 지원범위(별첨2 확인)에 포함 시킨다.  2014년 3월 1일부터 직류전기 트랙터 장치, 화재 신고 및 가스 소화장치, 연동 시스템, 석탄 화력 발전소 배연 탈질 플랜트 등 장비에 대한 수입 면세정책을 취소하다. 　3 세대 원자력 발전 유닛　일차 계통　설비，２세대　개진형　원자력　발전　유닛　일차계통　설비와 2차측 건물, 청소 기계, 콘크리트 펌프 차, 도시 철도 교통 장비 등 장비의 수입 면세부품과 원재료 목록(별첨3참조)을 조정한다.  5. 2014년에 새롭게 신청하여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향유하려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2014년 3월 1일로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시 수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요구는 본 통지의 별첨 1에 따라 시행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규정절차와 요구에 따라 상술한 영역의 지방 제조기업에서 신청한 자료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며 2014년 4월 15일전에 신청한 문건 및 1차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공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한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문건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은 수리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을 지참하여 세관에 세금담보에 따른 유관 부품과 원재료 통관수속의 사전 처리를 신청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2014년 5월 15일전에 제조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 자격인증 및 관련 요건의 심사 결정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한다.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6. 2015년도 및 그 이후에 신청하여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본 통지 별첨 1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7. 2013년도에 면세자격을 기 획득한 제조기업, 도시궤도교통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를 담당한 수행주체, 핵발전 장비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를 담당한 수행주체가 2014년 3월 1일(3월 1일 불포함) 이전에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의 면세를 계속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관세[2012]14호, 재관세[2013]14호 문건의 유관규정 및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03년에 면세자격을 기 획득한 제조기업과 수행주체가 계속하여 수입 핵심부품 및 원재료의 면세를 신청하는 경우, 본 통지의 유관 규정과 목록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8. 2013년에 이미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한 제조기업과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2014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본 통지의 별첨1의 유관 요구사항에 따라 재정부와 세관총서에 정책을 향유한 실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었으나 보고하지 않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정책 향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 2014년 3월 1일부터 다음의 문건을 폐지한다.  (1)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09]55호)  (2)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에 관한 통지>(재과세[2012]14호)  (3) <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3]14호)  별첨:  1.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규정  2.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4년 수정)  3.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수입 핵심 부속품 및 원재료 상품목록(2014년 수정)  4. 수입할 때 면세를 하지 않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4년 수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  2014년2월18일    별첨문건 다운로드：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917042/n15903564.files/n15903493.zip> |  | **财政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工业和信息化部等**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  财关税[2014]2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装备制造业振兴规划有关决定，提高我国装备制造业的核心竞争力及自主创新能力，推动产业结构调整和升级，促进国民经济可持续发展， 2009年8月，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出台了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根据近年来国内装备制造业及其配套产业的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及相关企业等方面意见的基础上，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规定和目录进行调整。现通知如下：  　　一、《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规定》（见附件1）自2014年3月1日起执行。  　　二、《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4年修订）》（见附件2）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及原材料商品目录（2014年修订）》（见附件3）自2014年3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2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本通知附件3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  　　三、《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4年修订）》（见附件4，以下简称《不免目录》）自2014年3月1日起执行。对2014年3月1日（含3月1日）以后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本通知附件4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  　　(一) 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  　　(二) 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  　　(三) 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  　　(四)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  　　(五)《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  　　为保证《不免目录》调整前已批准的上述项目顺利实施，对2014年3月1日前（不含3月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14年9月1日前（不含9月1日）进口本通知附件4所列设备，继续按照《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2]14号）附件3、《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3]14号）附件3、《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的公告》（2012年第83号）执行。对于有关进口设备按照调整前有关目录审核不符合免税条件，而按照调整后的《不免目录》审核符合免税条件的，自2014年3月1日起按照调整后的《不免目录》执行。货物已经征税进口的，不再予以退税。  　　自2014年9月1日起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本通知《不免目录》中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为保证政策执行的统一性，对有关项目和企业进口商品需对照《不免目录》和《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审核征免税的，《不免目录》与《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所列商品名称相同，或仅在《不免目录》中列名的商品，一律以《不免目录》所列商品及其技术规格指标为准。  　　四、根据国内产业发展情况，自2014年3月1日起，将国家支持发展的油气钻探设备、半潜式钻井平台、液化天然气运输船、深水物探船、接触网多功能综合作业车、湿式电除尘器等装备纳入到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支持范围（见附件2）。  　　自2014年3月1日起，取消直流供电牵引设备、火灾自动报警及气体灭火系统、联锁系统、燃煤电站烟气脱硝成套设备等装备进口免税政策；调整三代核电机组核岛设备、二代改进型核电机组核岛设备与常规岛设备、清筛机、混凝土泵车、城市轨道交通装备等装备的进口免税零部件及原材料目录（见附件3）。  　　五、2014年新申请享受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企业或项目业主，应在2014年3月1日至3月31日提交申请文件，逾期不予受理，具体申请程序和要求按照本通知附件1执行。  　　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按照规定程序和要求对上述领域的地方制造企业申请材料进行初审，并在2014年4月15日前将申请文件及初审意见汇总上报工业和信息化部，逾期不予受理。自2014年3月1日起，新申请企业提交的申请文件经初审符合要求的，企业凭受理部门出具的证明文件向海关申请凭税款担保先予办理有关零部件及原材料放行手续。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应在2014年5月15日前将制造企业或项目业主资格认定及相关因素核定结果报送财政部，逾期不予受理。  　　六、申请享受2015年度及以后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企业或项目业主，应按照按本通知附件1有关规定在上一年度11月1日至30日提交申请文件。  　　七、2013年已获得免税资格的制造企业、承担城市轨道交通自主化依托项目业主、承担核电装备自主化依托项目业主，在2014年3月1日前（不含3月1日）继续申请免税进口关键零部件及原材料的，按照财关税[2012]14号、财关税[2013]14号文件有关规定及目录执行；自2014年3月1日起，2013年已获得免税资格的企业及业主继续申请免税进口关键零部件及原材料的，按照本通知有关规定及目录执行。  　　八、2013年已享受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优惠政策的制造企业和项目业主，应在2014年3月1日至3月31日按照本通知附件1有关要求向财政部和海关总署报送享受政策落实情况报告，逾期未提交报告的企业或项目业主视为放弃享受政策。  　　九、自2014年3月1日起，下列文件予以废止：  　　1、《财政部、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09]55号）  　　2、《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2]14号）  　　3、《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3]14号）  　　附件：  　　1.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规定  　　2.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4年修订）  　　3.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及原材料商品目录（2014年修订）  　　4.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4年修订）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  2014年2月18日  附件下载：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917042/n15903564.files/n15903493.zip> |